KB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

이 <u>설명서</u>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, <u>실제 계약은 KB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, 거치식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</u>약관이 적용됩니다. <u>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</u>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

■ 상 품 명 : KB 퇴직연금정기예금

■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을 **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유형의**

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□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<u>실제</u>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 등에 따릅니다.

구 분	내용		
가입자격	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이 정한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사업자		
가입금액	제한 없음		
계약기간	고정금리형	1개월에서 60개월(5년)이내에서 연,월,일 단위로 계약	
	변동금리형	1년(회전기간 3개월, 6개월 2종류)	
세제혜택	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불가		

(세금공제 전, 연%)

만기	이자율
(2014.0	6.23 기준)

	٦Ì	이자율	
구 분	월구간	일구간	(연%)
	1개월~ 3개월 미만	28일 이상 ~ 93일 미만	1.45
	3개월~ 6개월 미만	93일 이상 ~ 183일 미만	1.75
	6개월~ 9개월 미만	183일 이상 ~ 274일 미만	1.95
	9 개월 ~ 12 개월 미만	274일 이상 ~ 367일 미만	2.05
고정	12 개월 ~ 18 개월 미만	367일 이상 ~ 555일 미만	2.10
금리형	18 개월 ~ 24 개월 미만	555일 이상 ~ 735일 미만	2.15
	24 개월~30 개월 미만	735일 이상 ~ 915일 미만	2.30
	30 개월~36 개월 미만	915일 이상 ~ 1096일 미만	2.30
	36 개월 ~ 60 개월 미만	1096일 이상 ~ 1830일 이하	2.35
	60 개월		2.40
변동	1년(37	1.75	
금리형	1년(67	1.95	

- 분할인출은 만기(중도)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가능하며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(근로자)별로 횟수를 산정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출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하며 횟수에 제한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
 - 1.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지급
 - 2.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
- 고정금리형

사 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	
사 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그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 상에 따라 6 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등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 우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제도전환을 위한 가입자 지도전환 또는 가입자 이전 국민은행 내 계약이전	최초 만기 前 -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: 신규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- 12개월 미만 : 신규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자율 - 12개월 이상 :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만기이자율	만기 재예치 後 - 계약기간 12개월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해당 계약기간별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- 12개월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퇴직연금 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자율 - 12개월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명직연금정기예금 12개월제 만기이자율 - 12개월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정기 예금 만기이자율	
□ 가입자의 사망			
니 기타시커 시()			
□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	-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자율(가산금리 포함)		

분할인출이자율 (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 는 경우 적용 이자율)

(세금공제전,

2014.06.23기준)

	그 교체에에	-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	- 1년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<u>일반정기예금</u> 만기이자율 - 1년 이상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이자율
	*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민 :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	! 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	지 이자율 적용
	(단. 퇴직연금수수료를 취득할	· 할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	에 적용된 이자율 적용)
	■ 변동금리형		
	사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
분할인출이자율 (만기 이전에 특정 사유로 예금을 인출하 는 경우 적용 이자율) (세금공제전,2014.06.23	□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14 조 및 18 조 2 항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 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 에 따라 6 개월 이상 요 양을 하는 경우 ③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5 년 이내에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피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기타 천재지변등 고용 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와 요건을 갖춘 경우 □ 가입자의 사망	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신규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만기이자율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되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

	- 회전기간이 지난 : 회전기간이 지난 : 회전기간별로 : 최전기간별로 : 시작일에 고서 되지 이전 민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 무분 (세금공자 연금형태지급 (세금공자 계치기간 15일 미만 15일 이상~ 1개월 이상~ 3개월 미만	회전기간 된 베금
	3개월 이상 □ 퇴직연금 수수료 취득 - 회전 기간별 적용 *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: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<u>경과기간별 일반정기(</u> (단. 퇴직연금수수료를 취득할 경우에는 신규일 또	
	■ 고정금리형(2011.12.19 신규분부터 적용) 사 유 최초 만기	前 만기 재예치 後
중도해지이자율 (세금공제전,2011.12.19 기준)	- 신규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지 경과기간에 해당하지 일반정기예금 중인 이자율	- 1년 미만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<u>일반정기예금</u> 하는 <u>만기이자율</u>
	- 신규 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ㅇ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<u>경과기간별 일반</u>	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

	■ 변동금리형				
	사 유	최초 만기 前	만기 재예치 後		
	□ 계약해지 □ 다른 사업자 계약이전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(세금공제전, 연%) 예치기간 이자율 15일 미만 0.1 15일 이상~ 1개월 미만 0.5 1개월 미만 0.5 3개월 미만 1.0	- 회전기간이 지난 부분 : 회전기간별로 회전기간 시작일에 고시된 퇴직연금정기예금 만기이자율 - 회전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 : 최종 재예치일에 고시된 잔여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 만기이자율		
		또는 재예치 후 1개월 미만 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의 <u>경과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</u>			
			(세금공제전, 연%)		
미기들이되오	경과기간		이자율		
만기후이자율 (2011.12.19 기준)	만기후1개월이내 	만기이자율 X 50% 내 만기이자율 X 30%			
(2011.12.19 万元)		대 한기이사를 X 30% 0.5			
	- 만기이자율 : 신규가입일 또는	최종 재예치일의 일반정기예금 그	교시이자율 적용		
이자지급방식	고성금리영 셈하여 민	재예치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로 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			
	변동금리형 에 회전기간 시작일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자율! 셈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				
	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	재예치합니다	변금과 이자를 아래의 재예치		
		<u>!객에 한하여 사동 새예지!</u>	에 대한 내용을 고객이 지정한		
자동재예치	<u>이메일로 통지합니다.</u> 고정등	금리형 고정금리형			
	l 구분 l	의 계좌 월(년) 단위 계좌	변동금리형 계좌		
	재예치기간 12기	최초 가입기간과 배월 동일 기간	최초 계약기간단위와 동일 기간		
계좌의 해지	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				
예금자보호 여부	이 퇴직연금 또는 <mark>개인퇴</mark> 대 상 가 보호하되 여 금융기관	<mark>직연금</mark> 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정 , 보호 한도는 모든 보호금융성	당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당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 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		

3 유의 사항

■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상담센터(☎1588-9999) 또는 **KB 국민은행홈페이지(www.kbstar.com)**에 문의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**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